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0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「지방자치법」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 하한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근거 조항 변경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감사청구 연서 주민연령 하한 완화 (안 제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9. 16. ~ 10. 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2021.10. 2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
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른”으
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19세 이상”을
“18세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</u>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<u>19세 이상</u> 150인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른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----- ----- <u>18세 이상</u>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.
- 관련조문 : 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감사담당관 이광재 (☎ 3153-8182)